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년 07월 05일(금)]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7.05.(금)	24.07.15.(월)	24.07.16.(화)	24.07.17.(수)	24.07.23.(화)	24.07.25.(목) ~24.07.29.(월)	24.08.05.(월) ~24.08.08.(목)

※ 공통 유의사항

- 구역 내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준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분양 상담 전화(☎02-972-0106), 공식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4/radieuse>)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 자격 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바쁘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4/radieuse>)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특별공급 / 일반공급 1·2순위)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0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격확인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24.07.15.(월)	24.07.16.(화)	24.07.17.(수)	24.07.23.(화)	24.07.25.(목)~24.07.29(월)	24.08.05.(월)~24.08.08.(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 ■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천,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와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와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1년	1년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6226호(2024.07.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3층, 15개동/총 1,637세대(조합원공급 634세대(보류지 1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아파트 7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53세대 : 일반(기관추천) 70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128세대, 생애최초 64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인허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24-000284	1	059.9600A	59A-1	59.9600	24.1800	84.1400	46.0100	130.1500	32.8100	225	23	12	70	44	6	155	70	10
				59A-2	59.9600	22.5100	82.4700	47.3900	129.8600	30.1300									
		2	059.9700B	59B	59.9700	24.3300	84.3000	46.0100	130.3100	32.8700	52	-	-	-	-	-	-	52	4
		3	059.9600C	59C	59.9600	23.9200	83.8800	46.0100	129.8900	32.7100	70	16	-	10	-	-	26	44	4
		4	059.9300D	59D	59.9300	24.7600	84.6900	45.9900	130.6800	33.0200	23	-	4	-	-	-	4	19	2
		5	084.9900A	84A	84.9900	23.1600	108.1500	65.2100	173.3600	42.1700	45	12	14	4	-	5	35	10	4
		6	084.9100B	84B-1	84.9100	24.4400	109.3500	65.1500	174.5000	42.6400	46	-	-	-	-	-	-	46	7
				84B-2	84.9100	26.5200	111.4300	67.1300	178.5600	40.7100									
		7	084.9500C	84C1-1	84.9500	25.8000	110.7500	65.1800	175.9300	43.1900	51	-	-	4	-	-	4	47	6
				84C1-2	84.9500	27.8800	112.8300	67.1500	179.9800	41.2300									
				84C2	84.9500	25.8000	110.7500	65.1800	175.9300	43.1900									
		8	084.9800D	84D-1	84.9800	24.6000	109.5800	65.2100	174.7900	42.7300	206	19	40	40	20	10	129	77	14
				84D-2	84.9800	26.6900	111.6700	67.1700	178.8400	40.8000									
합계											718	70	70	128	64	21	353	365	51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 중 복수의 단지에 공급하는 주택형(059.9600A/084.9100B/084.9500C/084.9800D)의 경우, 특정단지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약식표시 후단에 표기된 “-1”, “-2”는 단지 표기이며,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주거공용면적등의 차이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약식표기 중 “59A-1/59B/59C/59D/84A/84B-1/84C-1/84C2/84D-1”은 1단지이며, “59A-2/84B-2/84C1-2/84D-2”는 2단지입니다.

※ 주택형 약시표기 중 “84C1”과 “84C2”의 경우, 전용면적과 평면구조는 동일하나 세대내 출입 현관의 위치가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주택형 (약식표기)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2024.10.16	2025.03.19	2025.08.18	2026.01.16	2026.06.18	2026.11.19	
059.9600A	225	59A-1	110동1~4호 111동1,2호	2-3층	11	394,987,200	457,012,800	852,0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55,600,000
				4-5층	10	403,332,000	466,668,000	870,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261,000,000
				6-9층	22	415,849,200	481,150,800	897,0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269,100,000
				10-19층	40	428,366,400	495,633,600	924,0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277,200,000
				20층이상	5	436,711,200	505,288,800	942,0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282,600,000
		59A-2	201동1,2호 202동1,2호 203동1,2호	2-3층	11	382,933,600	443,066,400	826,0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247,800,000
				4-6층	17	390,351,200	451,648,800	842,0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52,600,000
				7-9층	18	407,504,400	471,495,600	879,0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263,700,000
				10-19층	52	428,366,400	495,633,600	924,0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277,200,000
				20층이상	39	436,711,200	505,288,800	942,0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282,600,000
059.9700B	52	59B	101동4,5호 106동4,5호	2-3층	8	404,722,800	468,277,200	873,0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261,900,000
				4-5층	8	413,067,600	477,932,400	891,0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267,300,000
				6-9층	14	426,048,400	492,951,600	919,0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275,700,000
				10-19층	18	438,565,600	507,434,400	946,0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283,800,000
				20층이상	4	447,374,000	517,626,000	965,0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96,500,000	289,500,000
059.9600C	70	59C	101동2,3호 106동2,3호	2-3층	8	392,669,200	454,330,800	847,0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254,100,000
				4-5층	7	401,014,000	463,986,000	865,0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259,500,000
				6-9층	14	413,531,200	478,468,800	892,0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267,600,000
				10-19층	28	425,584,800	492,415,200	918,0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275,400,000
				20층이상	13	433,929,600	502,070,400	936,0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280,800,000
059.9300D	23	59D	101동1호 106동1호	2-3층	3	405,650,000	469,350,000	875,0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87,500,000	262,500,000
				4-5층	4	413,994,800	479,005,200	893,0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267,900,000
				6-9층	8	426,975,600	494,024,400	921,000,000	92,100,000	92,100,000	92,100,000	92,100,000	92,100,000	92,100,000	92,100,000	276,300,000
				10-19층	7	439,492,800	508,507,200	948,0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94,800,000	284,400,000
				20층이상	1	448,301,200	518,698,800	967,0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96,700,000	290,100,000

- 7 -

주택형	공급 세대수	주택형 (약식표기)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2024.10.16	2025.03.19	2025.08.18	2026.01.16	2026.06.18	2026.11.19	
084.9900A	45	84A	108동3,4호 109동3,4호	2-3층	8	501,615,200	580,384,800	1,082,0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4-5층	8	511,814,400	592,185,600	1,104,0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331,200,000
				6-9층	16	528,040,400	610,959,600	1,139,0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341,700,000
				10-19층	13	548,902,400	635,097,600	1,184,000,000	118,400,000	118,400,000	118,400,000	118,400,000	118,400,000	118,400,000	118,400,000	355,200,000
084.9100B	46	84B-1	108동1,2호 109동1,2호	2-3층	7	503,006,000	581,994,000	1,085,0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25,500,000
				4-5층	8	520,159,200	601,840,800	1,122,0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336,600,000
				6-9층	4	540,094,000	624,906,000	1,165,0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349,500,000
		84B-2	201동3호 202동3호 203동3호	2-3층	6	482,144,000	557,856,000	1,040,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312,000,000
				4-6층	9	497,906,400	576,093,600	1,074,0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322,200,000
				7-9층	9	523,868,000	606,132,000	1,130,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339,000,000
				10-19층	3	556,783,600	644,216,400	1,201,0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360,300,000
084.9500C	51	84C1-1 84C2	102동1,4호 103동4호	2-3층	6	503,006,000	581,994,000	1,085,0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25,500,000
				4-5층	6	520,159,200	601,840,800	1,122,0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336,600,000
				6-9층	12	540,094,000	624,906,000	1,165,0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349,500,000
		84C1-2	201동5호 202동5호 203동5호	2-3층	6	503,006,000	581,994,000	1,085,0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25,500,000
				4-5층	6	520,159,200	601,840,800	1,122,0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336,600,000
				6-9층	12	540,094,000	624,906,000	1,165,0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349,500,000
				10-19층	3	550,756,800	637,243,200	1,188,0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356,400,000
084.9800D	206	84D-1	102동2,3호 103동1~3호 104동1~3호 105동1~3호	2-3층	22	503,006,000	581,994,000	1,085,0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25,500,000
				4-5층	22	520,159,200	601,840,800	1,122,0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112,200,000	336,600,000
				6-9층	44	540,094,000	624,906,000	1,165,0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116,500,000	349,500,000
				10-19층	50	550,756,800	637,243,200	1,188,0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118,800,000	356,400,000
				20층이상	35	561,419,600	649,580,400	1,211,000,000	121,100,000	121,100,000	121,100,000	121,100,000	121,100,000	121,100,000	121,100,000	363,300,000
		84D-2	201동4호 202동4호 203동4호	2-3층	6	482,144,000	557,856,000	1,040,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312,000,000
				4-6층	9	497,906,400	576,093,600	1,074,0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322,200,000
				7-9층	9	523,868,000	606,132,000	1,130,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113,000,000	339,000,000
				10-19층	9	556,783,600	644,216,400	1,201,0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360,3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출납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체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59A	59C	59D	84A	84C	84D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2	-	2	-	2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	2	-	2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4	-	3	-	5	17
	중소기업 근로자	5	4	-	2	-	5	16
	장애인 서울특별시	5	4	-	3	-	5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50%)	6	-	2	7	-	20	35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50%)	6	-	2	7	-	20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70	10	-	4	4	40	128
생애최초 특별공급		44	-	-	-	-	20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	-	5	-	10	21
합 계		155	26	4	35	4	129	353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포함)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기복부 제대군인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50%(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50%[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자]

※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의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tbody></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0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 <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 <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 <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 <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 <td>3명</td><td>20</td><td></td><td></td></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able>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4세대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table><tr><th>구분 (청약신청자 기준)</th><th colspan="2">소득세납부 기준</th></tr><tr><td>근로자 및 자영업자</td><td>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td><td row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td></tr><tr><td>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td><td>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td></tr></table>	구분 (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구분 (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함께 제출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tr><th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th><th colspan="2">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 colspan="4">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r><td colspan="2">2024.07.05.</td><td colspan="2">(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 colspan="4">(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table>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tr><th colspan="2" rowspan="2">소득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5">소득금액</th></tr><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tr><td colspan="2">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td>130% 이하</td><td>~9,105,862원</td><td>~10,723,007원</td><td>~11,407,592원</td><td>~12,432,267원</td><td>~13,456,941원</td><td>~14,481,615원</td></tr><tr><td colspan="2">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td>130% 초과 160% 이하</td><td>9,105,863원~ 11,207,214원</td><td>10,723,008원~ 13,197,547원</td><td>11,407,593원~ 14,040,114원</td><td>12,432,268원~ 15,301,251원</td><td>13,456,942원~ 16,562,389원</td><td>14,481,616원~ 17,823,526원</td></tr><tr><td rowspan="3">추첨공급</td><td rowspan="2">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td>11,207,215원~</td><td>13,197,548원~</td><td>14,040,115원~</td><td>15,301,252원~</td><td>16,562,390원~</td><td>17,823,527원~</td></tr><tr><td>160% 이하</td><td>~11,207,214원</td><td>~13,197,547원</td><td>~14,040,114원</td><td>~15,301,251원</td><td>~16,562,389원</td><td>~17,823,526원</td></tr><tr><td>1인 가구</td><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td>11,207,215원~</td><td>13,197,548원~</td><td>14,040,115원~</td><td>15,301,252원~</td><td>16,562,390원~</td><td>17,823,527원~</td></tr></tabl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0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0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포함)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 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 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모두 인정됩니다.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은행)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23.(화) ~ 2024.08.01(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7.2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4.07.25(목) ~ 24.07.29(월) 10:00 ~ 17:00	• 당사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방식 등 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4/radieuse>)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 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유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 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이상/25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및사업체운영자인경우→현지관공서에서발급받은사업또는근로관련서류,취업또는사업비자발급내역등 •근로자가아닌경우→①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해외에서발급받은서류의경우번역공증첨부필수임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발급기간:제출대상자의출생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정하여발급(개명한경우,개명한시점에따라개명전출입국사실을추가제출 할수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3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 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 세 이상 ~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과거자격변동사항이전부표기되어야하며,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표시로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 세 이상 ~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 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부양가족제외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최근1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경우 ※발급기간:직계존·비속의출생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정하여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자녀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 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과거자격변동사항이전부표기되어야하며,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표시로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 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일반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3 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자녀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부양가족제외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직계존·비속의출생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정하여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형저가 주택 등)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 사실증명원	배우자, 세대원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인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당첨자격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세무서,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및 재직증명서 ㉡ 전년도 재무재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건본주택 비치 ㉡ 세무서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함
-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 세무서 ㉣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날이니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되니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본인 및 청약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건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센터 방문해 전국통합발급요청,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 **자산보유기준**(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됨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전에 당첨자격 서류검수를 완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4.08.05(월) ~ 24.08.08(목) (10:00~17:00)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	02-972-0106

-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4/radieuse>)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로 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납부 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비고	※ 발코니 및 추가옵션계약			※ 아파트 공급계약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01-0348-6857-21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농협은행 301-0348-6857-21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무순위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상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예외)
 -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당첨자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서울시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거래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자격확인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단, 매월 대출이자 납부일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잔여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마지막 대출이자 납부일까지로 합니다.)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법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그리너리 카페, 피트니스 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주민회의실, GX클럽, 시니어클럽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7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59A (59A-1, 59A-2)	16,150,000	1,615,000	14,535,000
59B	20,840,000	2,084,000	18,756,000
59C	17,250,000	1,725,000	15,525,000
59D	20,740,000	2,074,000	18,666,000
84A	22,090,000	2,209,000	19,881,000
84B (84B-1, 84B-2)	22,820,000	2,282,000	20,538,000
84C1 (84C1-1, 84C1-2)	21,870,000	2,187,000	19,683,000
84C2	22,190,000	2,219,000	19,971,000
84D (84D-1, 84D-2)	20,950,000	2,095,000	18,855,000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창호, 확장형 주방가구 및 드레스룸 가구(해당타입), 확장부위 마감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흠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흠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설치)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부분(예 : 안방발코니 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제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흠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01-0348-6770-11	(주)대우건설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주)대우건설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 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추가 선택품목 대금 중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농협은행 301-0348-6770-11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모든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주방 스타일링 특화, 평면옵션 및 수납특화옵션 등)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유상)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현관중문	전타입	미설치	59A (59A-1, 59A-2)	3연동 중문	1,230,000	123,000	1,107,000
			59B		1,230,000	123,000	1,107,000
			59C		1,230,000	123,000	1,107,000
			59D		1,230,000	123,000	1,107,000
			84A		1,200,000	120,000	1,080,000
			84B (84B-1, 84B-2)		1,230,000	123,000	1,107,000
			84C1 (84C1-1, 84C1-2)	여단이 중문	1,160,000	116,000	1,044,000
			84C2		1,160,000	116,000	1,044,000
			84D (84D-1, 84D-2)	3연동 중문	1,230,000	123,000	1,107,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타입	벽: 실크벽지 / 바닥: 강마루(섬유판) 거실 아트월 타일(600*1,200)	59A (59A-1, 59A-2)	벽: 흡착벽지 / 바닥: 광폭 강마루(섬유판)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1,200*1,200) + 세라믹 타일 연장	4,360,000	436,000	3,924,000
			59B		5,680,000	568,000	5,112,000
			59C		6,440,000	644,000	5,796,000
			59D		5,730,000	573,000	5,157,000
			84A		5,530,000	553,000	4,977,000
			84B (84B-1, 84B-2)		6,940,000	694,000	6,246,000
			84B (84B-1, 84B-2) (복도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7,200,000	720,000	6,480,000
			84C1 (84C1-1, 84C1-2)		6,940,000	694,000	6,246,000
			84C1 (84C1-1, 84C1-2) (복도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7,180,000	718,000	6,462,000
			84C2		6,940,000	694,000	6,246,000
			84C2 (복도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7,180,000	718,000	6,462,000
			84D (84D-1, 84D-2)		8,300,000	830,000	7,470,000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 아트월 타일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마감재 옵션은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며, 59A, 84A 타입은 세라믹 타일 연장은 제외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세라믹 연장: 59C, 84D 타입 / 다이닝 세라믹 연장: 59B, 59D, 84B, 84C1, 84C2 타입)

▶ 조명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조명 특화	전타입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59A (59A-1, 59A-2)	특화조명기구 : 거실 간접조명 + 침실(침실1,2,3) 엡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1,390,000	139,000	1,251,000
			59B		1,390,000	139,000	1,251,000
			59C		2,010,000	201,000	1,809,000
			59D		1,390,000	139,000	1,251,000
			84A		1,540,000	154,000	1,386,000
			84B (84B-1, 84B-2)		1,540,000	154,000	1,386,000
			84C1 (84C1-1, 84C1-2)		1,540,000	154,000	1,386,000
			84C2		1,540,000	154,000	1,386,000
			84D (84D-1, 84D-2)		2,180,000	218,000	1,962,000

- 수납 특화 옵션 등 타 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라이프업 수납 옵션(유상)

▶ 현관 수납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현관 수납특화	59A (59A-1, 59A-2)	기본 신발장	59A (59A-1, 59A-2)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340,000	34,000	306,000
	59B		59B		350,000	35,000	315,000
	59C		59C		400,000	40,000	360,000
	59D	기본 신발장 현관창고 : 가구도어(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59D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현관창고 : 폴딩도어 + 수납선반 특화	1,060,000	106,000	954,000
	84A	기본 신발장	84A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390,000	39,000	351,000
	84B (84B-1, 84B-2)		84B (84B-1, 84B-2)		530,000	53,000	477,000
	84C1 (84C1-1, 84C1-2)		84C1 (84C1-1, 84C1-2)		440,000	44,000	396,000
	84C2		84C2		780,000	78,000	702,000
	84D (84D-1, 84D-2)		84D (84D-1, 84D-2)		610,000	61,000	549,000

- 현관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창고 가구도어 및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확장시에만 제공됩니다.
-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수납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복도 수납특화	59B	가구도어(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59B	폴딩도어 + 수납선반 특화	840,000	84,000	756,000
	84A	침실 붙박이장	84A	복도 팬트리 (폴딩도어 + 수납선반 특화)	410,000	41,000	369,000
	84B (84B-1, 84B-2)	다용도실 순환동선	84B (84B-1, 84B-2)	복도 팬트리 (폴딩도어 + 수납선반 특화)	2,550,000	255,000	2,295,000
	84C1 (84C1-1, 84C1-2)		84C1 (84C1-1, 84C1-2)		1,920,000	192,000	1,728,000
	84C2		84C2		1,920,000	192,000	1,728,000
	84D (84D-1, 84D-2)	미설치	84D (84D-1, 84D-2)	복도 장식장	840,000	84,000	756,000

* 복도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59B타입 복도 팬트리(가구도어+폴대형 시스템선반)는 확장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드레스룸 특화	59A (59A-1, 59A-2)	침실3	59A (59A-1, 59A-2)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4,920,000	492,000	4,428,000
	59B	파우더장 + 드레스룸(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59B	드레스룸 통합: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3,800,000	380,000	3,420,000
	59C	침실2	59C	슬라이딩 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4,980,000	498,000	4,482,000
	59D	파우더장 + 드레스룸(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59D	드레스룸 통합: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3,920,000	392,000	3,528,000
	84B (84B-1, 84B-2)		84B (84B-1, 84B-2)		2,370,000	237,000	2,133,000
	84C1 (84C1-1, 84C1-2)		84C1 (84C1-1, 84C1-2)		2,360,000	236,000	2,124,000
	84C2		84C2		2,360,000	236,000	2,124,000
	84D (84D-1, 84D-2)		84D (84D-1, 84D-2)		2,610,000	261,000	2,349,000

-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확장시 기본제공 품목은 평형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및 침실 내부 벽체는 도배지로 마감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점검구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파우더장, 드레스룸 풀대형 시스템선반은 확장시에만 제공되며, 드레스룸 가구도어의 기본 제공 여부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침실1 불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침실1 불박이장	84A	미설치	84A	침실 1 불박이장 (폴딩도어)	3,270,000	327,000	2,943,000
	84B (84B-1, 84B-2)		84B (84B-1, 84B-2)		3,170,000	317,000	2,853,000
	84C1 (84C1-1, 84C1-2)		84C1 (84C1-1, 84C1-2)		3,170,000	317,000	2,853,000
	84C2		84C2		3,170,000	317,000	2,853,000
	84D (84D-1, 84D-2)		84D (84D-1, 84D-2)		3,170,000	317,000	2,853,000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침실1 불박이장 길이는 동일합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 및 강마루가 설치됩니다.
- 평형 및 타입별로 불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수납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침실2,3 수납특화	84B (84B-1, 84B-2)	침실 불박이장 1개소	84B (84B-1, 84B-2)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1,230,000	123,000	1,107,000
	84C1 (84C1-1, 84C1-2)		84C1 (84C1-1, 84C1-2)		1,200,000	120,000	1,080,000
	84D (84D-1, 84D-2)		84D (84D-1, 84D-2)		1,130,000	113,000	1,017,000

- 평형 및 타입별로 불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2안) 선택 시 침실2,3에 공통 적용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3) 라이프업 키친 옵션(유상)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션형(유상)					(3안)_옵션형(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계약시	입주시
주방 스타일링 특화	전타입	• 벽 : 타일(300X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 기본 조명기구	59A (59A-1, 59A-2)	• 벽,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수전 : 고급형 (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 (주방상부장 작업등 + 주방슬림라인)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2,500,000	250,000	2,250,000	• 벽, 상판 : 세라믹타일 • 싱크수전 : 고급형 (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 (주방상부장작업등 + 주방슬림라인)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6,000,000	600,000	5,400,000
			59B		2,620,000	262,000	2,358,000		6,500,000	650,000	5,850,000
			59C		2,500,000	250,000	2,250,000		5,770,000	577,000	5,193,000
			59D	• 벽,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수전 : 고급형 (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 + 주방슬림라인 + 식탁등 특화)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2,680,000	268,000	2,412,000	• 벽, 상판 : 세라믹타일 • 싱크수전 : 고급형(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 + 주방슬림라인 + 식탁등 특화)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6,750,000	675,000	6,075,000
			84A		3,270,000	327,000	2,943,000		7,240,000	724,000	6,516,000
			84B (84B-1, 84B-2)		3,740,000	374,000	3,366,000		8,350,000	835,000	7,515,000
			84C1 (84C1-1, 84C1-2)		3,720,000	372,000	3,348,000		8,290,000	829,000	7,461,000
			84C2		3,720,000	372,000	3,348,000		8,290,000	829,000	7,461,000
			84D (84D-1, 84D-2)		2,730,000	273,000	2,457,000		5,790,000	579,000	5,211,000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2안) 및 세라믹 타일(3안)은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3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다다 / DD-277AC)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3안) 선택 시 코너스톤 싱크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FD 1803) 제품이 설치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_확장시		(2안_옵선행(유상)					(3안_옵선행(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계약시	입주시
주방 특화	59A (59A-1, 59A-2)	● 평면 : 주방 ● 벽 : 타일(300X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 기본 조명기구	59A (59A-1, 59A-2)	● 평면 : 주방 + 아일랜드 ● 벽,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수전 : 고급형 (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주방슬림라인)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3,570,000	357,000	3,213,000	● 평면 : 주방 + 아일랜드 ● 벽, 상판 : 세라믹타일 ● 싱크수전 : 고급형(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주방슬림라인)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7,420,000	742,000	6,678,000
	59C		59C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주방슬림라인)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3,260,000	326,000	2,934,000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주방슬림라인)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6,800,000	680,000	6,120,000
	84D (84D-1, 84D-2)		84D (84D-1, 84D-2)	● 평면 : 주방 +아일랜드 + 장식장 ● 벽,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수전 : 고급형 (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 + 주방슬림라인 + 식탁등 특화)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5,580,000	558,000	5,022,000	● 평면 : 주방+아일랜드+장식장 ● 벽, 상판 : 세라믹타일 ● 싱크수전 : 고급형(아메리칸스탠다드) ● 특화조명기구(주방상부장 작업등 + 주방슬림라인 + 식탁등 특화) ●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9,770,000	977,000	8,793,000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2안) 및 세라믹 타일(3안)은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및 아일랜드 장식장의 디자인과 수납량은 평형별로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3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다다 / DD-277AC)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3안) 선택 시 코너스톤 싱크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FD 1803) 제품이 설치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59A타입에는 가구판넬 마감에 포함됩니다.

▶ 주방 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선행(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주방 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	59A (59A-1, 59A-2)	냉장고 상부장+키큰장	59A (59A-1, 59A-2)	2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키큰장	3,280,000	328,000	2,952,000
	59B		59B	2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	3,020,000	302,000	2,718,000
	59C		59C	2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키큰장	3,280,000	328,000	2,952,000
	59D		59D	2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	3,010,000	301,000	2,709,000
	84A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84A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김치)+키큰장	5,230,000	523,000	4,707,000
	84B (84B-1, 84B-2)	냉장고 상부장+키큰장	84B (84B-1, 84B-2)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김치)	4,780,000	478,000	4,302,000
	84C1 (84C1-1, 84C1-2)		84C1 (84C1-1, 84C1-2)		4,740,000	474,000	4,266,000
	84C2		84C2		4,740,000	474,000	4,266,000
	84D (84D-1, 84D-2)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84D (84D-1, 84D-2)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장+냉동+김치) +키큰장	5,280,000	528,000	4,752,000

- 2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냉동고, 냉장고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제품(RR40C7995AP/RZ34C7865AP)으로 설치됩니다. (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제품(RR40C7995AP/RZ34C7865AP/RQ34C79(8)45AP)으로 설치됩니다. (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컬럼 및 3컬럼 패키지 냉장고는 글라스 마감의 새틴 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2컬럼 및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평형별로 키큰장 및 F/S 김치냉장고의 규격이 일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라이프업 바스 옵션(유상)

▶ 욕실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안)_기본형(무상)		(2안)_옵선행(유상)				
	주택형	내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욕실풍화	전타입	• 벽 : 타일 (300*600/국산) • 도기/수전 : 일반형(국산)	59A (59A-1, 59A-2)	• 벽 : 대형타일 (600*1,200/외산), 욕조 측면 타일 마감 • 도기/수전 : 고급형 (아메리칸 스탠다드)	3,920,000	392,000	3,528,000
			59B		3,920,000	392,000	3,528,000
			59C		3,920,000	392,000	3,528,000
			59D		3,920,000	392,000	3,528,000
			84A		3,940,000	394,000	3,546,000
			84B (84B-1, 84B-2)		3,940,000	394,000	3,546,000
			84C1 (84C1-1, 84C1-2)		3,940,000	394,000	3,546,000
			84C2		3,940,000	394,000	3,546,000
			84D (84D-1, 84D-2)		3,940,000	394,000	3,546,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비데일체형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 C8340 / C3640),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 C 151500L), 세면기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FA 1615), 욕조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FB5786 + FH6125), 샤워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FC 5794), 사각선반(진명홈바스 / MD314 1개소) 제품이 설치 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양변기(계림요업 / C 432), 세면기(계림요업 / L307SP/G207), 세면기수전(대신건기산업 / HFL 0513 또는 GL 2013), 욕조수전(대신건기산업 / HFB 0530), 샤워수전(대신건기산업 / FFB 105), 코너선반(진명홈바스 / JCS5150B 1개소, JCS5152B 2개소) 제품이 설치됩니다.

5) 가전류(유상)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선택(안)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전타입	전기쿡탑	쿠쿠전자	2안	인덕션 3구	CIRS-FL301FB-S	650,000	65,000	585,000
	전기오븐	삼성전자	2안	일반형	NQ36A6555CK	450,000	45,000	405,000
			3안	고급형	NQ50T8539BK	850,000	85,000	765,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2안	일반형	DW60BB800UAP	1,100,000	110,000	990,000
			3안	고급형	DW60BB837UAP	1,400,000	140,000	1,260,000
	욕실복합환풍기(2개소)	힘펠	2안	-	FHD3-C150P_MT	1,200,000	120,000	1,080,000
59B, 59D, 84B, 84C1, 84C2, 84D	천장형 제습기	코스텔	2안	-	CDD-600B	780,000	78,000	702,000

-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디자인이 변경되며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RBR-S3410BSJ / 린나이)
- 전기쿡탑 옵션형(2안/인덕션 3구) 선택시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1안)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선택1, 선택2)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새틴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욕실 2개소)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시스템에어컨(유상)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59A/C	2안	2대	거실 + 침실1	삼성전자	2,800,000	280,000	2,520,000
	3-1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3-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4,100,000	410,000	3,690,000
59B/D	2안	2대	거실 + 침실1		2,800,000	280,000	2,520,000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84A/B/C/D	2안	2대	거실 + 침실1		3,200,000	320,000	2,880,000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580,000	5,220,000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제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은 제외)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택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시 침실1 및 거실에는 냉매배관 및 냉매배관 박스,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7) 시스템청정환기(유상)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59A/C	2안	2대	거실 + 침실1	삼성전자	1,980,000	198,000	1,782,000
	3-1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394,000	3,546,000
	3-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2,960,000	296,000	2,664,000
59B/D	2안	2대	거실 + 침실1		1,980,000	198,000	1,782,000
	3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394,000	3,546,000
84A/B/C/D	2안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2,960,000	296,000	2,664,000
	3안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4,920,000	492,000	4,428,000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 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 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 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 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온/오프라인 판매가는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 외 판매되는 옵션의 경우 시공사(대우건설)와는 무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01-0348-6770-11	(주)대우건설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주)대우건설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대금 중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농협은행 301-0348-6770-11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 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항목 외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들은 향후 별도 공지합니다.

9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공통]

구분	내용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59A형, 84B형, 84D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제품품목, 조명, 스위치, 배선기구 등의 위치,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지 주변 도로 및 지형은 일부 간소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 도로와 교통 시설물 등은 인허가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본주택	• 건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건본주택, 단지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는 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홈페이지,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난간, 방음벽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 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홈페이지,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 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건본주택 오픈전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선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상에 건본주택을 VR촬영한 e-모델하우스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 사정에 따라 분양홈페이지와 함께 폐쇄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에 사용된 주동 입면디자인, 색채, 옥상구조물 등의 마감재, 색상 및 형태, 조경, 커뮤니티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분양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리플렛, 전단, 분양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터널),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건본주택 내 사인물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건본주택의 사인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부대복리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 등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과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특히, 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착공 및 분양 이후, 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

분양홍보물	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홈페이지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 사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예정입니다. • 예정된 입주시기는 준공 승인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 정비기반시설(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등) 등이 건축시설의 준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통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네이밍 및 주동 측벽 옥상구조물에 적용된 B.I 위치, 개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 초등학교는 선곡초등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 및 공원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공원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환경영향평가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단지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 계획되어 있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음벽 관련 내용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삭제, 변경,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경계 레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레벨, 상가진입레벨 등이 달라지고 계단, 경사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 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 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동의 주변레벨 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지하철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 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 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0.169g입니다.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 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 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 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 · 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주차장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드라이에어리어 (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 · 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또는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둘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일반사항	•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열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만·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시설물, 건물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녹지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및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분양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측면 로고 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 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도로 레벨은 서울시 성북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결부위(단지출입구, 도로설계, 시설물의 높이 등의 설계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의 결과에 따라 특화공사(기단부석재, 옥상장식물, 주동 입면디자인, 조경, 경관조명, 커뮤니티 시설 등)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레벨차이로 옹벽, 경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및 보도의 선형, 재질, 경사, 레벨, 단차 등은 당 사업지와 무관하며 계약 전 반드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이후 시행자와 시공자의 협의 및 사업시행(경미한)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및 개요, 마감재, 조경 등의 일부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특성 상 이사 시 사다리차 운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시니어클럽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 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 형도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시니어클럽, 주민공동시설 등)은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 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천장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동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시니어클럽,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니어클럽,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독서실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 하부, 조경공간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카이커뮤니티의 실외기의 경우 105동 옥상위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에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빗물저류조, 정화조(위치는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 동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은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냄새 피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정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없음.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보관소, 관리시설,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 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1블럭과 2블럭의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사용 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입주 후 조합 및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 1블럭과 2블럭의 각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1블럭과 2블럭 각각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선정 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 근방에 위치한 세대는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1개소로 공동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에 별도 지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 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주차 위치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팬, D/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내 택배배달차량, 쓰레기수거차량 이동 등을 고려한 차량통행구간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었으며,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차량 이용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	• 엘리베이터는 코어별 1~2대가 설치되오니 이점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지하 동출입구 등의 공용부분은 동 형태에 따라 규모, 마감재,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화강석)로 마감될 예정이며 계단실 등 코어외벽 및 일부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석재 및 페인트 등 재료의 적용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 근처 필로티 내, 주동 주변과 단지 조경공간에는 제연휀룸 및 휀룸 급배기를 위한 환기구 (D.A)가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는 정화조/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를 위한 환기창(배기다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에서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 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마감 및 상부 물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 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옥외시설물,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주동 외벽의 색채, 마감재, 외관디자인 등은 현장 시공 및 향후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과정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옥상구조물 상부에는 별도 도장 마감이 없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계획되어 있는 옥상녹화 부분은 현장여건 또는 각종 인증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장식물의 높이 및 사이즈와 태양광 패널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설의 통합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시스템(동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예정임)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1층 및 지상2층 하부 PIT층에 제연실(제연휀룸), 실외기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	• 아파트 옥탑층(층벽 포함)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전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등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청형(자우대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가동(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만 적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 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근에서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택배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소재, 색상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조경	• 출입구 근방에 설계된 주동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및 차량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차량출입표시기에 의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분진 및 냄새,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도보 및 차량 이동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성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조경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 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커뮤니티, 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지하주차장 등)은 입주민과 공동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 및 분양아파트 구분없이 계획되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건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일조불만족 세대가 있으니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일조만족이 어려울 수 있고, 고층이라 하더라도 배치 계획에 따라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 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 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 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D/A 및 환기창, T/L 생활폐기물 보관소, 가스정압기실 등 단지 내 시설(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 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시 충 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 다. - 단지와 외부도로 및 시설 사이의 경계담장 및 헨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 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 특성 및 창호, 난간 사양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이용시 지하주차장 층고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단지배치/조경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설치 시)의 지상 돌출물이 각 동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 전후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정화조 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포장 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저층 세대는 옥외에 설치된 놀이/휴게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유리난간 등),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시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 및 사양은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배수층(또는 배수판)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구분	내용
공통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 및 발코니 외벽라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확장 시 거실 및 침실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 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하향식 피난설치) 내부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는 보일러가 발코니에 확장시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 부위가 없도록 입주자께서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보일러의 유지보수를 위해 세탁/건조기 배치 간섭 시 해당 가전제품을 이동하여야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해당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선행세대(선행하여 시공,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선시공세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감재의 훼손에 대해서는 입주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할 예정입니다.
마감재	•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 바랍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도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분양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미사용 시 해당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세대와 일반분양 세대의 마감재가 일부 상이하며, 품목 및 수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에 손끼임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전기/설비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보일러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탁기, 건조기 및 김치냉장고 등 가전류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분입니다.

전기/설비	•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위에 건조기 설치 시 창문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급수급탕분배기)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발코니, 일부 싱크대하부 공간 등은 욕실 난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욕실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풍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빗물저수조, 정화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빗물저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면적은 본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관련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 미설치)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이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필요시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DA)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전기/설비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필로티내 또는 주동 주변과 단지 조경공간에 제연팬류 환기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실, 방재실 등)의 실외기가 시설내 또는 아파트 2층 하부 PIT층, 시설 옥상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정화조, 빗물저류조, 영구배수시스템 등의 입주 후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별 아파트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지하층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펌프실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시 인접한 세대 및 호실은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별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의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최하층~지상1층) 및 공기청정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는 다용도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욕조 하부, 샤워실 바닥은 난방 미적용, 드레스룸, 팬트리의 시스템 가구쪽은 난방이 미적용 될 수 있으며 코일 피치 간격은 거실/침실과 다름)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바닥배수구는 동절기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봉수파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등 입주자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 세대는 세대별 외벽에 주방/욕실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 파우더 룸에 콘센트 일체형 조명기구과 같은 복합 기구 적용시, 해당 기구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다용도실 세탁기를 제거해야만 보일러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에 면한 실의 경우 발코니가 삭제 또는 축소된 타입은 단열재 설치로 세대 내부로 일부 벽면이 돌출될 수 있으며, 해당 발코니가 삭제되어 확장이 되지 않는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발코니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 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유무 등에 따라 설치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창호유리사양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유리난간이 적용되는 창호의 경우, 외부창호는 한쪽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다른 한쪽은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 확장시 유리난간 적용되는 창호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세대에는(최하층,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 제외)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됩니다. 피난사다리 케이스는 철재재질로 별도 마감이 없으며, 발코니 높은 턱 바닥 레벨에서 일부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피난사다리는 홀수층 짝수층의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며 위층 세대의 피난사다리가 아래층 천장에 노출되는 구조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 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App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 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 시, 안드로이드 7.0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맥 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App을 통한 세대 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 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등급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	--------------	--------------------	-------------------

건축물 개요		입증 개요	
건 속 용 도	상업용 주거시설(숙박건물) 주택지개발 아파트	입 증 번호	0-58829-0-2023-1084-9
건 속 주 소	경기도 67호 주택지개발 정비사업조합	입증 기간	한국부동산원
준 규 (예 정) 일	2026.06.30	주 소 기 간	2023.10.12 ~ 서울산업진흥원 주택건축인원의 발급발행 대상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로동 29-55 일대	입증 등급 입 증 등 급 : 최우수(그린1등급) 입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한국부동산원] 제 2015-7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83호	
주 소 지 상 용 도	지하3층 지상3층		
연 면 적	251,423.740㎡ (평가 연면적 245,665.8700㎡)		
건 속 용 용 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유한인터니얼홈테크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을 입증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발급합니다.

(분리별 평가)

분리별 평가 항목	점수 (%)
도자이음 및 교목	70%
에너지 및 환경모양	87%
재료 및 자재	69%
발암물질 관리	53%
유지관리	68%
생태환경	81%
실내환경	72%

종합등급 ★ ★ ★ ★ ★

2023년 10월 12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검변경에 따른 인증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성북구 경리8-2(경북비인근형 주택개발사업) 4호선

2. 신 ·舊 : 4월 16일 4호선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임

3.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경리동 256-5 (경북비)

4. 상용 등급

5.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내진성능 평가결과	****
	내진성능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6. 환경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에너지효율성	에너지효율성 평가결과	****
	에너지효율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7.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8. 환경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에너지효율성	에너지효율성 평가결과	****
	에너지효율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9.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0.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1.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2.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3.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4.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5.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6.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7.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화재안전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환경친화성 평가결과	****

18. 인증 관련 등급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등급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에너지사업부 에너지사업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본 인증서는 예비인증의 결과,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요율	
건축물명	· 설계주: 서울특별시 재정기획연구회 주택재정국 4차사업	인증번호	· 16-주-제-01-014
준공연도	· 2021년 01월	발급처	· 환경부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장충동 25-55번지 일대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층 수	· 지하층: 2, 지상: 15~33층 (15개층)	평가범위	· 한국에너지공단
면 적	· 250,883.3(m ²)	평가기간	·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공주택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자	· 유한건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효율 (에너지소비효율 ENEC)	에너지효율 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1)	등급	에너지효율 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5)	등급	에너지효율 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9)	등급	에너지효율 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43)	등급	에너지효율 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47)	등급	에너지효율 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51)	등급	에너지효율 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55)	등급	에너지효율 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59)	등급	에너지효율 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63)	등급	에너지효율 1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67)	등급	에너지효율 1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71)	등급	에너지효율 1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75)	등급	에너지효율 1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79)	등급	에너지효율 1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83)	등급	에너지효율 1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87)	등급	에너지효율 1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91)	등급	에너지효율 1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95)	등급	에너지효율 1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99)	등급	에너지효율 1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03)	등급	에너지효율 2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07)	등급	에너지효율 2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11)	등급	에너지효율 2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15)	등급	에너지효율 2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19)	등급	에너지효율 2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23)	등급	에너지효율 2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27)	등급	에너지효율 2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31)	등급	에너지효율 2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35)	등급	에너지효율 2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39)	등급	에너지효율 2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43)	등급	에너지효율 3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47)	등급	에너지효율 3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51)	등급	에너지효율 3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55)	등급	에너지효율 3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59)	등급	에너지효율 3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63)	등급	에너지효율 3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67)	등급	에너지효율 3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71)	등급	에너지효율 3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75)	등급	에너지효율 3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79)	등급	에너지효율 3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83)	등급	에너지효율 4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87)	등급	에너지효율 4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91)	등급	에너지효율 4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95)	등급	에너지효율 4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199)	등급	에너지효율 4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03)	등급	에너지효율 4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07)	등급	에너지효율 4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11)	등급	에너지효율 4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15)	등급	에너지효율 4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19)	등급	에너지효율 4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23)	등급	에너지효율 5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27)	등급	에너지효율 5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31)	등급	에너지효율 5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35)	등급	에너지효율 5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39)	등급	에너지효율 5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43)	등급	에너지효율 5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47)	등급	에너지효율 5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51)	등급	에너지효율 5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55)	등급	에너지효율 5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59)	등급	에너지효율 5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63)	등급	에너지효율 6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67)	등급	에너지효율 6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71)	등급	에너지효율 6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75)	등급	에너지효율 6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79)	등급	에너지효율 6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83)	등급	에너지효율 6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87)	등급	에너지효율 6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91)	등급	에너지효율 6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95)	등급	에너지효율 6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299)	등급	에너지효율 6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03)	등급	에너지효율 7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07)	등급	에너지효율 7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11)	등급	에너지효율 7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15)	등급	에너지효율 7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19)	등급	에너지효율 7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23)	등급	에너지효율 7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27)	등급	에너지효율 7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31)	등급	에너지효율 7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35)	등급	에너지효율 7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39)	등급	에너지효율 7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43)	등급	에너지효율 8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47)	등급	에너지효율 8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51)	등급	에너지효율 8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55)	등급	에너지효율 8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59)	등급	에너지효율 8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63)	등급	에너지효율 8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67)	등급	에너지효율 86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71)	등급	에너지효율 87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75)	등급	에너지효율 88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79)	등급	에너지효율 89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83)	등급	에너지효율 90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87)	등급	에너지효율 91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91)	등급	에너지효율 92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95)	등급	에너지효율 93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399)	등급	에너지효율 94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403)	등급	에너지효율 95등급(에너지소비효율 ENEC < 407)	등급	에너지효율 96등급(에너지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0206 호

예비인증서

지역(시설)명 : 장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일대
 인 증 기 간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위 공원은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일반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인증 증명 확인

※ 본인확인서는 인증 내용을 담지할 수 없습니다.

※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발사할 및 지적 제발사할 등 허가된 후 1년 이내의 인증을

신장해 및 양 조부 제발사할 후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 없는 인증서는 조부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을 통해 인증 증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 가능) 지하2, 3층 : 2.3m 이상(택배차량 진입 불가)	주차장 출입구 : 2.7m 이상 지하2, 3층 램프 출입구 : 2.3m 이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4-101-0002000 호	₩ 513,950,5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별도)

구분	건축/굴토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씨에이파트너스	(주)서광이에프
감리금액	4,179,127,510	908,739,987	1,3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214-81-15867	312-86-60583	232-81-01003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114471-0003456	110111 - 2137895
주소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9길 33(월계동)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c/2024/radiouse>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
- 분양문의 : 02-972-0106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